1. 서론

부양의식변화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비중의 변화분석

Changes in Public Transfer Affected by Changes in People's Attitudes fowards Intergenerational Family Support

강성호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팀장

경제적·사회적 및 가족구조 변화는 부양의식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부양의식 변화는 부양구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양구조 변화가 공적이전소득 비중을 증가(사적이전소득 비중의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집단에서 연도별 공적이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노인가구, 고소 득층, 남성,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공적이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수준의 경우는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빠른 공적이전소득 비중의 증가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와 함께 가족구조 변화도 뚜렷이 진행되어왔으며, 무엇보다도 핵가족화로의 가족구조 변화는 고령화시기에 노인부양의식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오늘날 과거 전통적 미풍양속으로 여겨졌던 노인부양의식은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도시화 · 핵가족화 및 급격한 노령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노인 부양의식은 더욱 희박해져 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고 있으며, 사적부양 문제에서 공적부양 문제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 부양구조가사적부양에 치우쳤다면, 향후 도래할 부양구조

는 공적부양 중심 혹은 공·사적 부문의 적정한 역할분담의 강화로 전환이 예상된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은 공적분야에 서의 노인부양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 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부양의식 변화가 부양 구조(공·사적이 전소득의 비중 변화)를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양의식 변화에 따라 사적부양수준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공적부양수준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노부모 부양현황, 노인부양의식 변화, 그리고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방법의 변화에

대해 기존의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살펴본다.

2. 부양의식 및 노후준비수단 변화 현황

1) 노부모 부양현황

우리나라 가구주를 대상으로 부모님에 대한 부양여부에 대해 1994년부터 4년 단위로 분석 한 결과(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4년에 비해 1998년, 2002년, 2006년에 '부모 스스로 부양 (스스로 해결)'이 각각 4.0%p, 8.7%p, 8.7%p증 가한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자녀가 부양(자녀) 한다'는 응답은 각각 3.9%p, 8.8%p, 8.8%p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2006년에 있 어서는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최근에 이러 한 경향이 다소 완화된 측면은 있는 것으로 추 측되나,이러한 경향이 부양의식변화의 완화 때 문인지 아니면 경제적 여건변화 때문인지에 대 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또한 자녀의 노부모 부양현황에 대한 두드러진 특징은 '장남'의 비 중이 줄어드는 현상(33.1%→27.0%→22.7%→ 15.1%)이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2002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딸보다는 장남 혹은 아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2006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 역별로는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고 있다'는 비 율은 도시지역(동부) 보다는 농촌지역(읍 · 면 부이 높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격차

	표 1. 부모님 생계부양자(가구주)												
									(단위: %)				
구분		부모 있는	TU∃				스스로	기타					
		가구주	자녀	장남	아들들	딸들	아들과 딸들	해결	714				
	전국	100.0	62.1	33.1	16.3	1.6	11,1	37.6	0.3				
1994	동부	100.0	58.8	29.9	15.8	1.6	11.4	40.9	0.3				
	읍면부	100.0	77.8	48.4	18.3	1.5	9.6	22.1	0.1				
	전국	100.0	58.2	27.0	19.8	1.8	9.6	41.6	0.2				
1998	동부	100.0	55.8	24.5	19.4	1.8	9.9	44.0	0.2				
	읍면부	100.0	73.0	42.3	21.9	1.3	7.5	26.8	0.2				
	전국	100.0	53.3	22.7	17.5	1.7	11.4	46.3	0.5				
2002	동부	100.0	51.3	20.7	17.1	1.7	11.8	48.2	0.5				
	읍면부	100.0	66.5	36.1	20.2	1.2	8.9	33.0	0.5				
	전국	100.0	53.3	15.1	11.7	2.3	24.2	46.3	0.5				
2006	동부	100.0	52.1	14.4	11.5	2.3	23.9	47.5	0.5				
	읍면부	100.0	60.4	19.3	13.0	2.0	26.1	38.9	0.7				
자료 : 통7	예청(2007). 사회통	계조사, 각년도; 통	통계청(2007).	2007고령자	통계.								

가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스스로 생계를 해결' 하고 있는 비율은 농촌지역 (읍·면부)보다 도시지역(동부)이 높게 나타났으며, 1994년에서 2002년까지는 격차가 증가하였다가 2006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추이를 통해볼때, 부모에 대한 부양행 태 중 자녀에 의존하는 경향은 점차적으로 약해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립경향이 강해저서라기 보다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는 부양의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전통적 부양행태인 장남에 대한 의존성이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자녀의 노부모 부양(의존성) 비중이 낮았으며, 시 간이 지날수록 그 격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농촌(읍·면부), 도시지역을 불문하고 노부모부양의식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앞에서 설명한 부양의식 변화와 관련하여 또다른 측면에서, 노부모에 대한 실제적인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의식조사결과에대해서 살펴본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노후부양책임이 '장남'에서 '능력있는 자녀'에게로, 개인에서 사회(국가)로 전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2〉에 의하면장남에 대한 노부모의 의존 경향이 1979년에는 30.6%로 나타났으나 80년대 20%대로,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10%대 수준으로 의존 경향이감소하여 2006년에는 12.4%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녀 모두에게 부양책

표 2. 노부모 부양 책임	!에 대한 견해
----------------	-----------------

(다이 %)

				(인귀. %)						
				가 족					사회 및	
연도	소계	장남	아들 모두	딸	자녀	능력있는 자녀	아들 · 딸 모두	자립	기타	
1979	59.8	30.6	22.2	0.6	6.4	(6.4)		36.6	3.6	
1983	71.7	22.1	21.7	0.8	27.1	(27.1)		20.5	7.8	
1988	79.3	25.2	17.8	0.5	35.8	(35	.8)	15.8	5.0	
1991	78.7	18.3	13.8	0.4	46.2	(46	5.2)	15.4	5.9	
1994	87.3	19.6	11.4	_	56.3	(27.2)	(29.1)	9.9	2.9	
1998	89.9	22.4	7.0	0.5	60.0	(45.5)	(14.5)	8.1	2.0	
2002	70.7	15.1	13.9	1.0	40.7	(21.2)	(19.5)	9.6	19.7	
2006	63.4	12.4	5.1	0.6	45.3	(14.1)	(31.2)	7.8	28.8	

자료: 경제기획원(1996),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1998, 2002),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7). 각 국 노인의 가족부양현황과 과제, 한국의 노인가족부양의 현황과 과제.

통계청(2007), 2007고령자 통계,

임이 있다는 비중이 199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면서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4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회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1998년까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02년, 2006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족과 자신의 책임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 및 기타' 부문에서의 부양책임이 19.7%, 28.8%로 증가하여, '개인' 혹은 '가족'에서 '사회 및 국가'로의 부양책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앞의 〈표 1〉, 〈표 2〉를 통해 볼 때 자너의 부모 부양의식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약화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 태도측면에서 전통적인 부모 부양의

식이 점점 감퇴하고 사회적 부양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노인의 경 제적 자립도 감소와 노인 부양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 부재 등 적절한 사회적 여건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문 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우 러가 있다.

3)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방법

노인의 지위가 약화되고 노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노인의 경제적 약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경제적 약화에 대해 〈표 3〉에서는 1998년에서 2005년의 통계청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표 3.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65세 이상)													
(5)														
구분		65세 이상 인구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음	소일거리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의 푸대접	경로의식 약화	노인복지 시설의 부족	기타1)			
	전체	100.0	30.8	3.4	8.9	33.9	12.1	2.9	1.6	3.6	2.9			
1998	남자	100.0	33.7	4.7	9.4	30.9	10.7	2.3	2.0	4.4	2.0			
	여자	100.0	28.9	2.6	8.5	35.7	13.0	3.2	1.4	3.1	3.5			
	전체	100.0	33.9	2.9	5.8	41.5	8.5	2.2	1.0	2.3	1.8			
2002	남자	100.0	37.4	4.1	6.4	38.7	6.8	1.8	1.2	2.7	0.9			
	여자	100.0	31.7	2.2	5.5	43.3	9.5	2.5	0.8	2.1	2.4			
	전체	100.0	44.6	4.9	6.3	30.1	6.4	1.6	1.8	4.2	0.2			
2005	남자	100.0	46.4	7.0	7.1	25.9	4.6	1.4	2.6	4.9	0.1			
	여자	100.0	43.3	3.4	5.8	33.0	7.5	1.7	1.3	3.7	0.2			
주: 1)	1998년	, 2002년에	'잘 모르겠다	' 포함.						· '				

¹⁾ 이가옥(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후소득보장의 책임과 관련하여 개인(가족)책임에서 사회(국가)책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통계청의 2005년(2002년, 1998년) 기준「사회 통계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 44.6%(33.9%, 30.8%), '건강문제' 30.1%(41.5%, 33.9%), '외 로움·소외감' 6.4%(8.5%, 12.18%), '소일거리 가 없음' 6.3%(5.8%, 8.9%), '직업이 없음' 4.9%(2.9%, 3.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볼때 1998~2005년 사이에 노인문제로 생각하 는 주요항목의 순서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들의 어려운 문제 1순위 인 '경제적인 어려움'은 2002년(1998년)에 비 해 10.7%p(13.8%p) 증가한 반면, '건강문제'는 11.4%p(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현상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보다 경제적 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현 노인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노인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이라기 보다 부양의식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공·사적 소득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해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들은 무엇보 다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4⟩에 의하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노후소득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2002년

표 4. 노후소득 준비방법(18세이상 가구주, 주된 응답)

(다의: %

											(단위: %)
							준비 방법				
연도	유	무	연	금	퇴직금	보험	예금,	계	부동산	유가	기타
			공적	사적	되구0	포함	적금	711	ᅮᅙᄁᅼ	증권	/14
1983	39.0	61.0	4	.3	_	7.6	14.8	5.5	1	_	6.8
1988	35.1	64.9	11	.5	_	8.6	9.4	1.3	3.6	0.6	0.2
1991	39.0	61.0	13	.4	_	11.2	10.4	0.7	2.9	0.3	0.1
1994	53.0	47.0		15.9		16.0	17.8	0.5	2.5	0.1	0.1
1998	53.3	46.7	14.6	14.6	3.9	_	16.6	0.1	3.4	0.1	-
2002	64.5	35.5	28.4	15.9	2.3	_	13.6	0.1	3.8	0.2	0.1
2005	63.5	36.5	28.8	12.8	2.73	_	14.5	0.13	4.19	0.32	0.06
2007	72.7	27.3	35.7	11.8	2.8		16.8	_	5.0	0.7	0.1

자료: 경제기획원(1996), 한국의 사회지표, p115,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현황과 과제, 한국의 노인가족부양의 현황과 과제.

통계청(1998, 200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각년도), 사회통계조사,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통계조사,

^{2) 2002}년 기준으로 순서 상 5번째와 6번째의 노인문제로 지적한 '직업이 없음'과 '가족으로부터 푸대접'이 1998년과 비교하여 순 서가 바뀌긴 하였으나 주요항목의 순서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순서는 바뀌지 않았지만 4개년 동안 각 노인문제에 대한 비율이 바뀜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문제로 느끼는 항목의 강도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문제 가 더욱 강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준 64.5%) 공적 노후소득보장도 시행 초기에 있으므로 노후소득의 충분성 측면에서 의문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 준비 방법 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금, 예금·적금, 부동산 이 노후준비를 위한 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과 전국민연금이 실현된 1999년 이후 공적연금이 노후준비수단으로 상대적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때 향후 노후준비 방법에서 공적분야의 역할 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즉, 1998 년 이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하여 살펴 보면 공적연급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만, 사적연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1999년 전국민연금화 이후 국민연금 즉 공적연 금의 향후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연금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용에서 오는 불만과 보험료 부담에 따른 거부감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수준 은 높지 못한 상태에 있어, 오늘날 부양의식 변 화 흐름에 공 · 사적 역할분단이 그리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3. 부양의식변화에 따른 공적이 전소득 비중의 확대

1) 분석자료 및 방법

본 고에서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 (raw data)를 활용하여 앞에서 살펴본 부양의식

변화가 공·사적 이전소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부양의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계열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동 자료의 1982~2007년까지 총 26년간 연간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및 개인특성별로 분석하다.

앞의 〈표 2〉에서와 같이 1979년부터 2006년 까지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견해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로 오면서 '자녀' 및 '자신'에게서 '사회 및 기타'로 공적부양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분석대상 시기는 앞의 분석시기와 거의 유사하므로 총 26년간 연간자료에 대한 분석은 이미부양의식의 변화가 있는 자료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 시기를 대상으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공·사적 이전소득의 전환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는 가구주가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간의 관계에 대해주로 살펴볼 것이다. 6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 연령기준인 60세 여서 60세 이후 공적이전소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82년부터 26년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65세 이상 보다는 60세 이상 가구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로 할 경우 분석 표본수가 매우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이다.

공·사적 이전소득의 전환관계를 분석하기 이전에 도시근로자가구의 26년 동안의 가구일

반 현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5>에서는 연도별 · 가구주연령별로 가구의 경제적 · 인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2007 년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가구주 가구의 월평 균 경상소득은 2,015천원, 근로소득은 1,580천 원, 이전소득 361천원, 공적이전소득 247천원, 시적이전소득 266천원, 가구주 연령 65.6세, 가 구주 남성일 비율 67.5%, 가구원수 2.3명, 교육 연수 9.2년으로 나타났다. 한편, 60세 미만 가구 주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3.387천원, 근로 소득은 3,130천원, 이전소득 391천원, 공적이 전소득 298천원, 사적이전소득 370천원, 가구 주 연령 41.9세. 가구주 남성일 비율 80.1%. 가 구원수 3.2명, 교육연수 13.0년으로 나타났다. 60세 가구주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때 60세 미만 가구에 비해 60세 이상 가

구는 현재의 경제수준 뿐 아니라 인적현황 측면에서도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이라는 것을 집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와 '90년대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가구주의 연령을 60세 기준으로 단순히 구분한 것이며, 60세 미만 가구에 60세 이상 노부모가 없다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60세 미만 가구주 가구에서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의 절대액 수준이 높다는 것은 60세 이상 가구원을 모시고 사는 60세 미만 가구주 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가구주 기준으로 두 집단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교한 것이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단위: 처워 세 % 명 년)

표 5. 연도별 · 가구수연령멸	가구의 경제 · 인석현황

															(- 11	L' L', '	ΛII, 70,	0, ட/	
				60세	미만 기	구주				60세 이상 가구주									
연도	경상	근로	이전	공적	사적	가구주	가구주	가구원	교육	경상	근로	이전	공적	사적	가구주	가구주	가구원	교육	
	소득	소득	소득	이전	이전	연령	성	수	년수	소득	소득	소득	이전	이전	연령	성	수	년수	
1982	310	287	83	41	91	35.7	88.88	4.4		259	230	64	4	65	62.9	86.8	4.0		
1983	353	327	88	28	120	35.8	87.7	4.3		263	218	112	21	113	62.8	84.3	3.8		
1984	389	361	133	99	135	35.6	87.3	4.2		288	256	80	11	84	63.4	85.6	4.3		
1985	415	383	149	144	147	35.7	88.0	4.2		372	320	128	217	113	62.4	74.8	3.9		
1986	460	422	139	129	139	36.0	87.7	4.1		453	388	140	194	138	62.9	71.3	3.5		
1987	534	489	157	136	157	35.9	87.8	4.0		485	378	167	119	164	62.9	92.3	3.5		
1988	619	569	192	192	189	36.3	89.0	4.0		522	447	163	175	158	63.1	91.5	3.6		
1989	751	687	235	202	235	36.7	89.0	4.0		700	601	250	317	231	63.7	81.0	3.3		
1990	885	810	306	286	304	36.9	89.4	4.0	11.8	886	726	245	69	270	63.0	80.8	3.4	9.4	
1991	1,081	984	433	344	444	37.5	89.5	4.0	11.9	793	621	257	48	287	63.4	81.7	3.0	9.0	
1992	1,264	1,153	516	494	514	37.9	89.9	3.9	12.2	1,125	935	350	96	365	63.2	86.2	3.2	9.2	
1993	1,383	1,274	523	572	507	37.7	88.9	3.8	12.2	1,154	993	315	370	293	63.2	86.2	3.1	9.8	

70 보건복지포럼 (2008. 10.)

(丑 5	〉계속																		
				60세	미만 기	구주				60세 이상 가구주									
연도	경상	근로	이전	공적	사적	가구주	가구주	가구원	교육	경상	근로	이전	공적	사적	가구주	가구주	가구원	교육	
	소득	소득	소득	이전	이전	연령	성	수	년수	소득	소득	소득	이전	이전	연령	성	수	년수	
1994	1,578	1,448	549	566	536	38.1	87.3	3.8	12.3	1,398	1,212	419	443	376	63.3	85.3	3.1	10.0	
1995	1,793	1,642	584	551	579	38.5	86.8	3.8	12.3	1,626	1,401	455	604	379	63.4	82.6	3.1	10.0	
1996	2,011	1,837	600	642	581	39.0	86.1	3.7	12.3	1,858	1,626	406	518	326	63.1	81.9	3.1	10.0	
1997	2,147	1,953	685	715	667	39.3	85.6	3.7	12.3	1,931	1,646	496	681	380	63.3	82.0	3.0	9.9	
1998	2,026	1,853	371	717	331	38.9	88.3	3.7	12.6	1,832	1,606	382	382	358	63.5	88.3	3.1	10.1	
1999	2,096	1,906	367	413	345	39.3	85.6	3.6	12.6	1,934	1,581	504	280	524	63.3	82.9	3.2	10.7	
2000	2,247	2,060	312	238	316	39.8	83.8	3.6	12.6	1,775	1,407	358	249	379	63.3	80.5	3.1	9.9	
2001	2,490	2,276	341	280	341	40.4	83.4	3.6	12.7	1,859	1,448	411	310	413	63.5	78.3	2.9	10.0	
2002	2,684	2,457	365	267	376	40.6	82.8	3.5	12.8	2,073	1,661	388	355	305	63.6	79.8	3.0	10.0	
2003	2,868	2,675	435	288	468	40.7	85.9	3.6	12.9	1,939	1,594	391	338	326	64.1	78.0	2.8	9.6	
2004	3,029	2,795	460	287	490	41.1	83.8	3.5	12.9	2,035	1,659	363	262	327	64.2	73.7	2.8	9.7	
2005	3,186	2,914	437	300	441	41.5	83.7	3.5	13.0	2,162	1,699	396	274	328	64.3	75.2	2.7	9.7	
2006	3,182	2,926	401	300	389	41.7	80.4	3.2	13.0	1,961	1,549	372	247	298	65.2	65.6	2.3	9.5	
2007	3,387	3,130	391	298	370	41.9	80.1	3.2	13.0	2,015	1,580	361	247	266	65.6	67.5	2.3	9.2	

- 주: 1) 경상소득=근로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으로 산출하되. 유효 값만 평균임(다른 변수도 동일).
- 2) 근로소득=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급여소득(상여금 포함)
- 3) 가구주성=남성의 비율
- 4) 교육년수=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전문대 2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으로 계산

2) 분석결과

여기서는 60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총 26년 동안의 공·사적 이전소득의 비중변화를 분석한다. 26년 동안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양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공적이전소득의 상대비중이 증가한다면, 부양의식 변화로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물론이러한 비중 변화가 부양의식 변화로만 설명된다고 하기에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을 수 있

으나, 공·사적 이전소득의 비중 변화의 주요한 요인은 부양의식 변화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종합적 측면에서의 공·사적 이전 소득의 변화의 결정요인은 추후 연구에서 계속 되기를 희망하며, 본 고에서는 두 관계의 단순 비교형태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가구주 특성을 기준으로 연도별 공 적이전 비중 변화추이를 4가지 형태로 분석하 고자 한다. 즉, 노인 가구³⁰ 여부에 따른 차이, 소 득수준별 차이, 성별 차이, 교육수준별로 구분 하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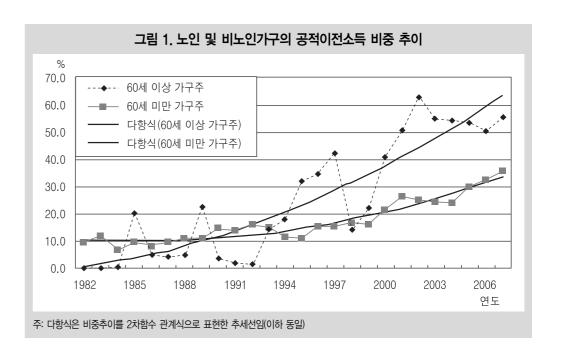
3) 여기서는 편의상 노인 가구를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로 정의한다.

첫째, 노인 가구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 연도별로 볼 때 사적이전소득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공적이전소득 수준은 증가하는 경향을 따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에서와 같이 1982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증가하고, 그 기울기는 체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적이전소득 비중 증가로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60세 이상 가구주와 60세 미만 가구주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급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대 초를 전후하여 추세선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60세 미 만 가구주 가구에서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60 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 비해 높았지만 이후 역 전되어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 공적이전소 득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를 전후하여 부양의식변화로 인해 노인 가구에 대한 사적지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1994년 이후노인가구의 공적연금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도입 후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는 시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노인가구 중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60세 미만 가구주가구의 공적소득 비중 증가는 동가구 내고령자의 공적이전소득과 복지지원(최저생계비지원등)수준의 증가 때문으로 볼수 있다.

둘째, 가구의 소득수준별 분석이다. 여기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매년도 가구경상소득을 서열화하여 1/3씩으로 나누어 저소득, 중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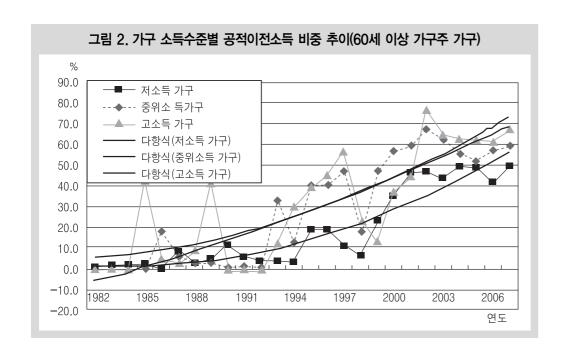
72 _ 보건복지포럼 (2008.10.)

고소득으로 가구를 구분하였으며, 이중 60세 이상 가구주가구에 대해서만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림 2]를 보면,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앞의 [그림 1]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를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2차 함수 형태로 추세선을 그어본 결과 기울기가 체증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비해 오늘날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현상을 저소득, 중위소득, 고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 비해 중위소득 및고소득가구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과거시점 보다현재로 올수록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급 수급자등 공적연금 수급자가 중위소득 및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되고,

그만큼 현재의 저소득 노인 가구는 여전히 사적이전소득에 상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꾸준한 격치는 있지만, 저소득계층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낮지만 격치는 벌어지고 있지 않고, 미세하나마 2000년대 중반이후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등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그만큼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60세 이상 가구주의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성별로 구분한 경우 에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 오늘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 며, 추세선 형태에서 볼 때 그 기울기가 체증하 는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앞의 그림들과 동일하다 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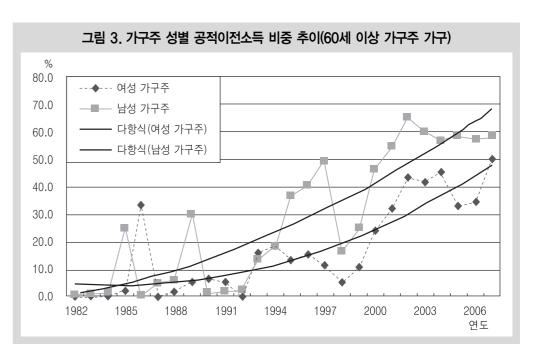
60세 이상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여성에 비해 과거에 비해 현재로 올수록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등 공적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 되고, 그만큼 현재의 여성 가구주 가구는 여전히 사적이전소득에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 기간 동안 여성가구주의 공적 이전소득비중은 남성가구주에 비해 일정한 격차 가 존재하나, 2000년대 후반부로 올수록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인다.

넷째, 60세 이상 가구주 교육수준별로 구분 하여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앞에서와 마찬 가지로 가구주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과거에 비 해 오늘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인 것은 앞의 설명과 마찬가지이다. 여기 서는 교육수준 구간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교육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가구주 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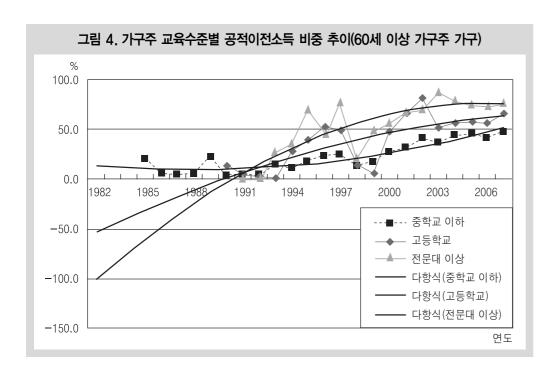
60세 이상 가구주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 적연금 비중이 높았지만, 2000년 이후 수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 상은 그 동안 교육수준에 의해 공적연금 등 수 급기회에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최근 교육수준 에 관계없이 공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26년 동 안의 공·사적 이전소득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부양의식 변화로 사적분야의 노후 준비가 점차



74 _ 보건복지포럼 (2008.10.)



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1999년 전국민 연금화, 그리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등은 향후 공적이전소득이 증기할 것임을 짐작하 게 한다. 물론 최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문제 로 2007년 7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2028년 이후 소득수준을 자신의 생애 평균수준의 40%선까지만 보장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다소 감소할 여지는 있으나, 고령화의 급속한 진 전과 부양의식의 변화로 국가의 노후보장 책임성 이 부각되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이전소득의 비 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적이전소득의 비 중은 상대적으로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적으로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공적분야의 역할 이를 볼 때 공적이전소득 비중의 증가로 전보다 윤택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지는 실제적으로 사적이전소득 수준의 변화정도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상 가치기준으로 시적이전소득 수준의 감소는 없 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 노후생계수준 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한다면 부양 의식 변화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에의 구축효과 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적이전소득 비중의 증가수준과 시적이전소득 비중의 감소 수준을 고려한 전체 이전소득 비중의 변화정도 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노 후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 전소득 비중의 증가추이를 중심으로 보았으며, 이후의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器